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16
----------	------

2018년 03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18년 3월 14일

다. 회 부 일 : 2018년 3월 15일

라. 상 정 일 : 제27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3월 20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황인식)

가. 제안 이유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공직선거법」 [별표 3] 개정에 따른 자치구의회의원 총 정수 변경(안 별표)

- 증 4명 : 현 419명 (지역구 366, 비례대표 53)  
⇒ 423명 (지역구 369, 비례대표 54)

### 2)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안 별표)

-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의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
- 의원정수 증원
  - 강서구 : 증 2명(지역1, 비례1)
    - ▶ 현 정수 20명 ⇒ 22명(지역19, 비례3)
  - 강남구 : 증 2명(지역2)
    - ▶ 현 정수 21명 ⇒ 23명(지역20, 비례3)

### 3) 2014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각 시·도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별표] 일부 적용(안 별표)

- 자치구의원 의원정수와 선거구 변경
  - 은평구 : 증 1명(현 18명 ⇒ 19명)
  - 노원구 : 감 1명(현 22명 ⇒ 21명)
  - 노원구 바 선거구(2명)·사 선거구(2명) 현 4명 → 바 선거구로 통합 3명 (1명 감)

- 동 통합, 동 명칭 변경, 동 신설에 따른 선거구역 명칭 변경
  - 종로구 동 통합 : 혜화동·명륜3가동 ⇒ 혜화동
  - 중구 일부 동 명칭 변경 : 신당제1동 ⇒ 신당동, 신당제6동 ⇒ 동화동, 신당제2동 ⇒ 다산동, 신당제3동 ⇒ 약수동, 신당제4동 ⇒ 청구동
  - 노원구 일부 동 명칭 변경 : 공릉 1·3동 ⇒ 공릉1동
  - 송파구 동 신설 : 위례동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근거 :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개정 배경 및 상위법령과의 관계

-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하 ‘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3. 5 개정, 2018. 3. 9 공포·시행)의 법 개정 사항<sup>1)</sup>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의 자치구별 선거구획정 의견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 자치구의원 정수 변경

- 의원 총정수 : 419 → 423명(지역 369, 비례 54), 4명 증 조정(지역 3, 비례 1)
- 자치구별 정수 : 강서구 2명 증원(지역1, 비례1), 강남구 2명 증원(지역2)

##### 자치구의원 선거구 변경

- 선거구수 : 159 → 151개, 8개 감 조정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조정 전	159	111(70%)	48(30%)	0
조정 후	151	91(60%)	53(35%)	7(4.6%)

##### 동 통합, 동 명칭 변경, 동 신설에 따른 선거구역 명칭 변경

- 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노원구, 송파구) 8개 행정동

##### ◆ 변경 내역 ('10~'18.3월 현재)

- 동 통합 : 종로구 (혜화동·명륜3가동 ⇒ 혜화동)
- 동 명칭 변경 : 중구 5개, 노원구 1개
  - 중 구 : 신당제1동 ⇒ 신당동, 신당제6동 ⇒ 동화동, 신당제2동 ⇒ 다산동, 신당제3동 ⇒ 약수동, 신당제4동 ⇒ 청구동
  - 노원구 : 공릉 1·3동 ⇒ 공릉1동
- 동 신설 : 송파구 (위례동)

##### '14년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결과 적용

- 은평구 아 선거구 현 2명 → 3명 (1명 증)
- 노원구 바 선거구(2명)·사 선거구(2명) 현 4명 → 바 선거구로 통합 3명 (1명 감)
  - 노원구 바 선거구 :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1) ◆ 시의원 변경사항

- 시의원 지역구의원 총정수 : 96명 ⇒ 100명 (4명 증원)
  - 강서구강남구 각 2명 증원 : 제5·제6선거구 (국회의원 병 선거구)
- ※ 서울시의원 총정수 : 110명 (비례대표 10명 포함)
- 시의원 지역선거구 :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변경
  - '16년 국회의원 병 선거구 추가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추가 조정

- ◆ 자치구의원 변경사항 : 구의원 총정수 : 419명 ⇒ 423명 (4명 증원)

- 법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12일(2018.3.21)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시·도의회가 기한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시행규칙 제4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의 총정수는 423명(2014년 대비 4명 증원)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100분의 10, 단수는 1로 뺌)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 정수는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 원칙

- ① 자치구 의원 정수는 총정수(서울시 자치구의원 총정수 : 423명)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정함 (법 제23조 제1항).
  - ② 자치구의회 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함(법 제23조 제2항).
  - ③ 비례대표 자치구 의원 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단수는 1로 뺌(법 제23조 제3항).
  - ④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법 제26조 제2항).
  - ⑤ 지역구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며,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내에서 선거구 획정 (법 제26조 제2항, 제4항).
- ※ 시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내에서 제1, 2선거구 획정
- ⑥ 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동의 일부 분할 불가(법 제26조 제3항).
  - ⑦ 의원정수 산정 기준 (규칙 제4조 제1항 )
    - 총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인구비율과 행정동수 비율 고려
    - 의원정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구 및 행정동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함.
    -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함.
  - ⑧ 지역구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 안에서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함 (규칙 제4조 제2항).
    - ※ 상하 60%의 편차 범위 내 ('09.3.26, 2006헌마14)

## 공직선거법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 ###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정수는 -----(중략)-----.
- ②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 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sup>2)</sup>,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 제1차 회의(17.9.29)에서는 의원정수 기준일(17.8.31)을 결정하고 자치구별 의원 정수산정은 현 구의원수에 인구수 증감률을 적용하며,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고려할 원칙 등 공청회 개최안을 제안하였고,
- 제2차 회의(17.10.23)에서는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에 대해 방향을 정립하고, 소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개최일정 등 제반사항을 의결하였으며,
- 제3차 회의(2017.11.14)에서는 표의 증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인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획정의 기본 방향에 합의하였으며,
- 제4차 회의(2017.11.23) 및 제5차 회의(2018.1.5)에서는 자치구별 의원정수안 및 지역선거구 획정·선거구별 의원정수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진술 방안과 직접진술 청취(26개 기관)를 하였으며,
- 제6차 회의(2018.2.1)에서는 종로(다라), 용산(라마), 성북(마바)의 의원정수는 2014년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4인 선거구 수정(안)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 제7차 회의(2018.3.10)에서는 강서구 및 강남구를 2인씩 증원하고 3인 선거구 5개 지역 확대, 4인선거구 7개 도입 및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선거구획정안을 의결.
- 최종보고서 시장에게 제출('18.3.12)

- 획정위원회 안의 주요내용은 표의 증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시민의 이해관계 및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려는 방향에 따라 전체의원 정수중 강서구와 강남구의 의원 정수를 각각 2명씩 증원하고, 3인 선거구 확대(5개)와 함께 4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7개)하려는 것임.

---

2)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조정 전	159	111(70%)	48(30%)	0
조정 후	151	91(60%)	53(35%)	7(4.6%)

### 〈 확정위원회의 선거구 확정 기준 〉

-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확정
-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확대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의원 선거구가 변경되어 구의원 선거구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3인 선거구 신규 확대, 4인 선거구 시범 도입
- 인구편차가 큰 선거구를 대상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
- 공청회 의견 수렴, 의견진술기관(국회 의석이 있는정당, 자치구의회, 자치구청장)의 의견진술 결과 검토하여 확정
-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구수 기준일 : 2017.8.31

- 선거구를 확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선거결과가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으로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로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의 평등이 침해된다면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할 것임.
- ※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음.
- ‘표의 등가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33<sup>1</sup>/<sub>3</sub>%)편차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sup>3)</sup>가 있음.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 2009. 3. 26. 자 2006헌마14결정(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위헌확인)
-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원칙에 부합함.
  -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로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의 평등이 침해된다면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할 것임.
  -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이며 일차적인 기준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는 인구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 이러한 점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정이 유사한 광역선거구의 선례와 동일하게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함.

### ※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인구편차를 비교하여야 하는 국회의원선거나 시·도의원선거와 같이 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적고, 중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인구편차의 조정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선거나 시·도의원선거의 경우만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3) 2009. 3. 26. 자 2006헌마14결정(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위헌확인)

## 나.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안 별표)

- 개정안은 확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의원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2명(2명 증원 : 지역 1명, 비례 1명)으로 하고, 강남구의회의 의원정수를 현행 21명에서 23명(2명 증원 : 지역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구의 의원 정수는 2014년 현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2014년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미반영 사항 반영

- 은평구의회의 정수를 3명(1명 증원)하고, 노원구 바 선거구(2명) 및 노원구 사 선거구(2명)를 바 선거구로 통합하여 3명(1명 감)으로 하는 내용 반영.  
⇒ 노원구 바 선거구 : 상계 1동, 상계 8동, 상계 9동, 상계 10동

- 확정위원회는 당초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수에 인구수 증감을 반영하되, 증가했거나 감소한 자치구 중에서 증감사항,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나(4차 회의)<sup>4)</sup>, 최종안은 자치구별 의원정수에 대하여, 법적 기준(인구편차 상·하 60%)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없고, 일부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므로,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증감 조정 없이 2014년 의원 정수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6차 회의), 법에서 증원된 4명은 강서구 및 강남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에 따른 서울시의원 선거구 변경사항이 반영된 법 개정(「공직선거법」 제23조 및 ((별표 2), (별표 3)) 사항을 고려하여 강서구와 강남구만 각각 2명씩 증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자치구 선거구를 확정하고 각 자치구 의회의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자치구의원의 총정수가 423명으로 법(별표 3)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 자치구의 구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려면 다른 선거구의 구의원 정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제로섬 관계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 종로(다라), 용산(라마), 성북(마바), 강서(마), 송파(차)

- 중랑(가나, 사), 서대문(나다, 마), 마포(가나, 아)

## 다. 자치구의회 선거구 신설 및 변경(안 별표)

- 개정안은 서울시자치구의회 선거구수를 현행 159개에서 151개(8개 감소)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2인 선거구 111개를 91개(20개 감, △10%)로 하고, 현행 3인 선거구 48개를 53개(5개 증, 5%)로 확대하며, 4인 선거구 7개(4.6%)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변경 선거구 내역은 다음과 같음.

◆ 4인선거구 : 7개 선거구(신규)				
자치구	선거구			선거구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강남구	강남갑	제1선거구	가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병	제5선거구	마선거구	도곡1동, 도곡2동, 대치1동, 대치4동
강서구	강서을	제4선거구	라선거구	방화3동, 가양1동, 가양2동, 등촌3동
은평구	은평을	제3선거구	마선거구	진관동, 갈현1동, 갈현2동
강동구	강동갑	제2선거구	다선거구	명일1동, 명일2동, 길동, 상일동
	강동을	제4선거구	바선거구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둔촌1동, 둔촌2동
동대문	동대문을	제4선거구	사선거구	장안1동, 장안2동, 답십리2동
◆ 3인선거구 : 5개 선거구(신규)				
자치구	선거구			선거구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강남구	강남병	제6선거구	바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강남을	제3선거구	다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1동, 일원2동
강서구	강서갑	제2선거구	나선거구	발산1동, 화곡3동, 우장산동
	강서을	제3선거구	다선거구	공향동, 방화1동, 방화2동
	강서병	제5선거구	마선거구	가양3동, 등촌1동, 염창동
◆ 3인선거구 획정(변경 - 선거구역변경)				
자치구	선거구			선거구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강남구	강남갑	제2선거구	나선거구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을	제4선거구	라선거구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강서구	강서갑	제1선거구	가선거구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강서병	제6선거구	바선거구	화곡본동, 화곡4동, 화곡6동, 등촌2동
은평구	은평갑	제2선거구	라선거구	역촌동, 신사제1동
◆ 기타 선거구 획정(변경 - 선거구역변경)				
자치구	선거구			선거구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은평구	은평갑	제2선거구	다선거구	신사제2동, 수색동, 증산동
	은평을	제4선거구	사선거구	대조동, 구산동

- 4인 선거구 신설(7개)과 관련하여 확정위원회(4차 회의)는 당초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대폭 확대(35개)하기로 하였으나, 법적기준(인구편차 상하 60%)에서 조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를 병합해 4인 선거구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많은 기관의 반대의견(5차 회의 의견진술)이 있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에는 구의원 정수 확대와 연계한 선거구 변경지역(강남구 가·마, 강서구 라, 은평구 마)과 인구편차 개선효과가 높은 지역(강동 다·바, 동대문 사)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범 도입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음(7차 회의 최종안 의결).

〈4인 선거구 도입에 대한 주요 의견진술 결과〉

- 찬성(3) - 정당 (2) : 정의당, 민중당 - 자치구(1) : 도봉(구의회는 반대)
- 부분 찬성·반대(2)
  - 정당(2) : 국민의당(일부지역구 반대), 바른정당(일부지역구 반대)
- 반대(31)
  - 정당(2) :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 구의회(19) :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 자치구(10) :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서초

- 4인 선거구 신설의 경우, 「법」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확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시민의 이해관계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입이라는 확정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시의원 선거구와 구의원 선거구가 동일하게 중복 확정됨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선거비용 문제 등), 동일한 지역에서 4인을 선출함으로써 인구대표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하나의 시의원 선거구에서 자치구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09. 3. 26. 자 2006헌마14결정(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위헌확인)

2인 선거구제의 선택이 그 세력이 2위에 이르지 못하는 정당의 정치참여를 사실상 봉쇄하여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선거구제나 의원정수는 기본적으로 입법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에 따라서 일부정당의 정치참여 기회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효과에 불과함.

※ 시의원 선거구와 자치구의원 선거구가 동일하게 중복되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음.

자문 1	자문2	자문3
<b>「공직선거법」 위배되지 않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에 관해서는 <u>자유(입법) 재량</u> 행위임.</li> <li>-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서 지역구자치구 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한 것은 가능하다고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은 "자치구 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인 이하라면 반드시 분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하지 않는 데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li> <li>- 따라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u>자유재량</u>으로 가능하다고 풀이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자유재량에 해당된다고 판단.</li> <li>- 선거구 확정(분할)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li> <li>- 결론적으로 법문의 통일적 해석상 '4인'의 경우에는 재량여지가 많다고 보이나, '5인'의 경우에는 재량여지가 거의 없고 2개 이상의 선거구 분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li> </ul>

○ 한편, 의원정수가 증원된 강서구(지역1, 비례1 증원)와 강남구(지역의원 2명 증원)의 경우에 있어서,

강서구는 나선거구(108,801명)가 라선거구(107,392명)보다 인구가 많음(1,409명) 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나선거구를 3인으로 라선거구를 4인으로 확정하였고,

강남구는 다른 선거구보다 행정동이 많은 다선거구(일원 1·2동, 개포1·2·3동 등 5개 행정동)는 3개 행정동(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인 라선거구와 동일하게 3인 선거구로 확정(가·마선거구는 4인 선거구)하였는 바,

인구수 또는 행정동수 기준에 대한 원칙없는 확정이라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일관성 있는 적용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자치구 의회의 의원정수는 자치구 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인구 비율과 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sup>5)</sup>

○ 3인 선거구 5개 신규 확대(강남구 다,바 선거구, 강서구 나, 다, 마 선거구)의 경우 법 개정 때 시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의원 선거구를 조정 하면서 2인 선거구보다 다양성이 높은 3인 선거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확정위원회는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병합하거나 분할하지 않고 획정이 가능한 지역에 3인 선거구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는 점과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시의원 선거구내에서 자치구 선거구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의 일부 분할이 불가하고, 다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인구대표성에 문제(인구편차 심화)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공직선거법」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 라. 자치구 일부 동 통합·명칭 변경 등(안 별표)

- 그 밖에 별표에서 자치구 일부 동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바, 2010년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명칭변경 사항을 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법 별표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종로구 다 선거구	2	종로1·2·3·4가동, 이화동, <u>혜화동(동통합: 혜화동·명륜3가동)</u>
중구 가 선거구	2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u>신당동(동명변경: 신당제1동)</u> , 중림동
중구 나 선거구	2	신당제5동, <u>동화동(동명변경: 신당제6동)</u> , 황학동
중구 다 선거구	2	회현동, 필동, 장충동, <u>다산동(동명변경: 신당제2동)</u>
중구 라 선거구	2	<u>약수동(동명변경: 신당제3동)</u> , <u>청구동(동명변경: 신당제4동)</u>
노원구 나 선거구	3	<u>공릉1동(동명변경: 공릉1·3동)</u> , 공릉2동
송파구 차 선거구	2	거여2동, 장지동, <u>위례동(동 신설)</u>

※ 송파구 위례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2014년 서울시자치구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서울시의회 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2014년 선거법 미반영 사항 : 종로구 혜화동과 명륜3가동을 혜화동으로, 중구 신당제1동을 신당동으로, 신당제6동을 동화동으로, 신당제2동을 다산동으로, 신당제3동을 약수동으로, 신당제4동을 청구동으로, 노원구 공릉1·3동을 공릉1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 송파구 위례동이 신설되어 변경하였음.

## 마. 종합 의견

-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하겠음.
- 서울시 자치구위원의 총정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 의결 권한 등이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선거관리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획정위원회의 권한 및 그 의결내용을 의회가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획정위원회의 ‘자치구별·선거구별 의원정수 기준’인 인구수, 행정동수 등에 대한 주요 자치구 및 정당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바, 자치구의 우려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평성 있고, 균형잡힌 획정 노력과 함께 의견수렴 및 신중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확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고,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란을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강서구 라선거구가 행정동수가 4개이고, 면적이 넓다는 점을 고려한 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해야 할 것임.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16
----------	------------

제안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고,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안 (별표)란 중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란을 수정함(안 별표).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중 동대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대문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동가대문선거구	2	용신동
	동나대문선거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다대문선거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라대문선거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마대문선거구	2	전농제1동
	동바대문선거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사대문선거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아대문선거구	2	장안제1동

안 별표 중 은평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은평구	소 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 2)
	은가은평선거구	2	녹번동, 응암제1동
	은나은평선거구	2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다은평선거구	2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라은평선거구	3	역촌동, 신사제1동
은마은평선거구	2	갈현제1동, 갈현제2동	

은 바	평 선	거 구	2	진관동
은 사	평 선	거 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 아	평 선	거 구	2	구산동, 대조동

안 별표 중 강서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 서 구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 3)	
	강 가	서 선	거 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 나	서 선	거 구	2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 다	서 선	거 구	2	우장산동
	강 라	서 선	거 구	3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 마	서 선	거 구	3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강 바	서 선	거 구	2	염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 사	서 선	거 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 아	서 선	거 구	2	화곡본동, 화곡제6동

안 별표 중 강남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 남 구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강 가	남 선	거 구	2	신사동, 논현1동,
	강 나	남 선	거 구	2	압구정동, 청담동
	강 다	남 선	거 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 라	남 선	거 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 마	남 선	구 거	2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강 바	남 선	구 거	2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강 사	남 선	구 거	2	대치1동, 대치4동,
강 아	남 선	구 거	2	도곡1동, 도곡2동
강 자	남 선	구 거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안 별표 중 강동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 동 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강 선	동 거	가 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 선	동 거	나 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 선	동 거	다 구	2	상일동, 명일제2동
	강 선	동 거	라 구	2	명일제1동, 길동
	강 선	동 거	마 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 선	동 거	바 구	2	천호제2동
	강 선	동 거	사 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강 선	동 거	아 구	2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자치구별	현행			개정안			수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동대문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소 계	(현행과 같음)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동대문구 가 선 거 구	2	용신동	동대문구 가 선 거 구		2	용신동	동대문구 가 선 거 구	2	용신동	
	동대문구 나 선 거 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나 선 거 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나 선 거 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다 선 거 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 다 선 거 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 다 선 거 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 라 선 거 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라 선 거 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라 선 거 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마 선 거 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 마 선 거 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 마 선 거 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 바 선 거 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대문구 바 선 거 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대문구 바 선 거 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대문구 사 선 거 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사 선 거 구		4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사 선 거 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아 선 거 구	2	장안제1동	동대문구 아 선 거 구		2	장안제1동	동대문구 아 선 거 구	2	장안제1동	
은평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대표 2)	소 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대표 2)	소 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대표 2)		
	은평구 가 선 거 구	2	농번동, 응암제1동	은평구 가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은평구 가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은평구 나 선 거 구	2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평구 나 선 거 구		2	신사제2동, 중산동, 수색동		은평구 나 선 거 구	2	신사제2동, 중산동, 수색동
	은평구 다 선 거 구	2	중산동, 수색동	은평구 다 선 거 구		3	연촌동, 진차제1동		은평구 다 선 거 구	3	연촌동, 진차제1동
	은평구 라 선 거 구	2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은평구 라 선 거 구		4	갈현제1동, 갈현제2동, 진관동		은평구 라 선 거 구	2	갈현제1동, 갈현제2동
	은평구 마 선 거 구	2	갈현제2동, 구산동	은평구 마 선 거 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마 선 거 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바 선 거 구	2	갈현제1동, 진관동	은평구 바 선 거 구		2	구산동, 대조동		은평구 바 선 거 구	2	진관동
	은평구 사 선 거 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사 선 거 구		2	구산동, 대조동		은평구 사 선 거 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아 선 거 구	2	대조동, 대조동	은평구 아 선 거 구		2	구산동, 대조동		은평구 아 선 거 구	2	구산동, 대조동

자치구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강 서 구	소 계	18	의원정수 20 (지역구 18, 비례대표 2)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대표 3)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대표 3)
	강서구 가 선 거 구	3	화곡제1동,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가 선 거 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가 선 거 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 선 거 구	2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 선 거 구	3	화곡제3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 나 선 거 구	2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다 선 거 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서구 다 선 거 구	3	공향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서구 다 선 거 구	2	우장산동
	강서구 라 선 거 구	3	화곡본동, 화곡제6동, 우장산동	강서구 라 선 거 구	4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라 선 거 구	3	공향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서구 마 선 거 구	2	가양제1동, 공향동, 방화제1동	강서구 마 선 거 구	3	연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서구 마 선 거 구	3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바 선 거 구	2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바 선 거 구	3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강서구 바 선 거 구	2	연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서구 사 선 거 구	2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강서구 사 선 거 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서구 아 선 거 구	2	연창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강서구 아 선 거 구	2	화곡본동, 화곡제6동

자치구별	현행			개정안			수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강남구	소 계	18	의원정수 21 (지역구 18, 비례 3)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강남구 가 선 거 구	2	신사동 압구정동	강남구 가 선 거 구	4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 가 선 거 구	2	신사동, 논현1동
	강남구 나 선 거 구	2	논현1동, 논현2동, 청담동	강남구 나 선 거 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 나 선 거 구	2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 다 선 거 구	2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강남구 다 선 거 구	3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1동, 일원2동	강남구 다 선 거 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 라 선 거 구	3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라 선 거 구	3	세곡동, 일원본동, 주서동	강남구 라 선 거 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남구 마 선 거 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남구 마 선 거 구	4	대치1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마 선 거 구	2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강남구 바 선 거 구	2	대치2동, 일원2동	강남구 바 선 거 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강남구 바 선 거 구	2	세곡동, 일원본동, 주서동
	강남구 사 선 거 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남구 사 선 거 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남구 사 선 거 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남구 아 선 거 구	3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주서동, 세곡동	강남구 아 선 거 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강남구 아 선 거 구	2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자 선 거 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강남구 자 선 거 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강남구 자 선 거 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강동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강동구 가 선 거 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동구 가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강동구 가 선 거 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동구 나 선 거 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 나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강동구 나 선 거 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 다 선 거 구	2	상일동, 명일제2동	강동구 다 선 거 구	4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강동구 다 선 거 구	2	상일동, 명일제2동
	강동구 라 선 거 구	2	명일제1동, 길동	강동구 라 선 거 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동구 라 선 거 구	2	명일제1동, 길동
	강동구 마 선 거 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동구 마 선 거 구	2	천호제2동	강동구 마 선 거 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동구 바 선 거 구	2	천호제2동	강동구 바 선 거 구	2	천호제2동	강동구 바 선 거 구	2	천호제2동
	강동구 사 선 거 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강동구 사 선 거 구	4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문촌제1동, 문촌제2동	강동구 사 선 거 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강동구 아 선 거 구	2	문촌제1동, 문촌제2동	강동구 아 선 거 구	2	문촌제1동, 문촌제2동	강동구 아 선 거 구	2	문촌제1동, 문촌제2동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중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 계		369명	총정수 423명 (지역구 369, 비례대표 54)
-----	--	------	-----------------------------

별표 중 종로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계	9	의원정수 11 (지역구9, 비례대표2)
종로구	종로구 가 선거구	2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종로구 나 선거구	2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가회동
	종로구 다 선거구	2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종로구 라 선거구	3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별표 중 중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 구	소 계	8	의원정수 9 (지역구 8, 비례대표 1)
	중가 선 거 구	2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중림동
	중나 선 거 구	2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다 선 거 구	2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중라 선 거 구	2	약수동, 청구동

별표 중 동대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대문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동가 대선 문 거 구	2	용신동
	동나 대선 문 거 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다 대선 문 거 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라 대선 문 거 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마 대선 문 거 구	2	전농제1동
	동바 대선 문 거 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사 대선 문 거 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아 대선 문 거 구	2	장안제1동

별표 중 노원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원 구	소 계	18	의원정수 21 (지역구 18, 비례 3)
	노가 월 선 거 구	3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노나 월 선 거 구	3	공릉1동, 공릉2동

노다원선거구	3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노라원선거구	3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노마원선거구	3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노바원선거구	3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별표 중 은평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은평구	소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 2)
	은가선선거구	2	녹번동, 응암제1동
	은나선선거구	2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다선선거구	2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라선선거구	3	역촌동, 신사제1동
	은마선선거구	2	갈현제1동, 갈현제2동
	은바선선거구	2	진관동
	은사선선거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아선선거구	2	구산동, 대조동

별표 중 강서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서구	소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 3)
	강가선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나선선거구	2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다선선거구	2	우장산동	

강 라 선 거 구	서 구	3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 마 선 거 구	서 구	3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강 바 선 거 구	서 구	2	염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 사 선 거 구	서 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 아 선 거 구	서 구	2	화곡본동, 화곡제6동

별표 중 강남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 남 구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강 가 선 거 구	남 구	2	신사동, 논현1동,
	강 나 선 거 구	남 구	2	압구정동, 청담동
	강 다 선 거 구	남 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 라 선 거 구	남 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 마 선 거 구	남 구	2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강 바 선 거 구	남 구	2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강 사 선 거 구	남 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 아 선 거 구	남 구	2	도곡1동, 도곡2동
강 자 선 거 구	남 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별표 중 송파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송 파 구	소 계	23	의원정수 26 (지역구 23, 비례 3)
	송 가 선 거 구	파 구	3

송나	파선	거구	구	2	방이2동, 오륜동
송다	파선	거구	구	2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송라	파선	거구	구	3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송마	파선	거구	구	3	삼전동, 잠실3동
송바	파선	거구	구	2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송사	파선	거구	구	2	오금동, 가락본동
송아	파선	거구	구	2	가락2동, 문정1동
송자	파선	거구	구	2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송차	파선	거구	구	2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별표 중 강동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강 동 구	강선	동 거	가 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선	동 거	나 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선	동 거	다 구	2	상일동, 명일제2동
	강선	동 거	라 구	2	명일제1동, 길동
	강선	동 거	마 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선	동 거	바 구	2	천호제2동
	강선	동 거	사 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강선	동 거	아 구	2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u>같은법시행령 제3조의</u>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p>	<p>「공직선거법」 -----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 <u>4조의3</u>-----            ----</p>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자치구별	현행			개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합계		<b>366</b>	총정수 <b>419명</b> (지역구 <b>366</b> , 비례대표 <b>53</b> )		<b>369</b>	총정수 <b>423명</b> (지역구 <b>369</b> , 비례대표 <b>54</b> )		
종로구	소계	9	의원정수 11 (지역구 9, 비례대표 2)	소계	(현행과 같음)			
	종로구가 선거구	2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종로구가 선거구				
	종로구나 선거구	2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가회동	종로구나 선거구				
	종로구다 선거구	2	종로1·2·3·4가동, 이화동, <u>혜화동, 명륜3가동</u>	종로구다 선거구			2	종로1·2·3·4가동, 이화동, <u>혜화동</u>
	종로구라 선거구	3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승인제1동, 승인제2동	종로구라 선거구			(현행과 같음)	
중구	소계	8	의원정수 9 (지역구 8, 비례대표 1)	소계	(현행과 같음)			
	중구가 선거구	2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u>신당제1동</u> , 중림동	중구가 선거구	2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u>신당동</u> , 중림동		
	중구나 선거구	2	신당제5동, <u>신당제6동</u> , 황학동	중구나 선거구	2	신당제5동, <u>동화동</u> , 황학동		
	중구다 선거구	2	회현동, 필동, 장충동, <u>신당제2동</u>	중구다 선거구	2	회현동, 필동, 장충동, <u>다산동</u>		
	중구라 선거구	2	<u>신당제3동, 신당제4동</u>	중구라 선거구	2	<u>약수동, 청구동</u>		
용산구	(생략)			(현행과 같음)				
성동구	(생략)			(현행과 같음)				
광진구	(생략)			(현행과 같음)				

자치구별	현행			개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동대문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동대문구 가 선 거 구	2	용신동	동대문구 가 선 거 구	2	용신동
	동대문구 나 선 거 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나 선 거 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다 선 거 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 다 선 거 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 라 선 거 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라 선 거 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마 선 거 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 마 선 거 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 바 선 거 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대문구 바 선 거 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대문구 사 선 거 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사 선 거 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아 선 거 구	2	장안제1동	동대문구 아 선 거 구	2	장안제1동
중랑구	(생략)			(현행과 같음)		
성북구	(생략)			(현행과 같음)		
강북구	(생략)			(현행과 같음)		
도봉구	(생략)			(현행과 같음)		
노원구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대표3)	소 계	18	의원정수 21 (지역구 18, 비례대표 3)
	노원구 가 선 거 구	3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노원구 가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노원구 나 선 거 구	3	공릉1·3동, 공릉2동	노원구 나 선 거 구	3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 다 선 거 구	3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노원구 다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노원구 라 선 거 구	3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노원구 마 선 거 구	3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노원구 바 선 거 구	2	상계8동, 상계10동	노원구 바 선 거 구	3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노원구 사 선 거 구	2	상계1동, 상계9동			



자치구별	현행			개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은평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대표 2)	소 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대표 2)
	은평구 가구 선거구	2	녹번동, 응암제1동	은평구 가구 선거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은평구 나구 선거구	2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평구 나구 선거구		
	은평구 다구 선거구	2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 다구 선거구	2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 라구 선거구	2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은평구 라구 선거구	3	역촌동, 신사제1동
	은평구 마구 선거구	2	갈현제2동, 구산동	은평구 마구 선거구	2	갈현제1동, 갈현제2동
	은평구 바구 선거구	2	갈현제1동, 진관동	은평구 바구 선거구	2	진관동
	은평구 사구 선거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사구 선거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아구 선거구	2	대조동, 역촌동	은평구 아구 선거구	2	구산동, 대조동
	서대문구	(생략)			(현행과 같음)	
마포구	(생략)			(현행과 같음)		
양천구	(생략)			(현행과 같음)		
강서구	소 계	18	의원정수 20 (지역구 18, 비례대표 2)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대표 3)
	강서구 가구 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가구 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구 선거구	2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구 선거구	2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다구 선거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서구 다구 선거구	2	우장산동
	강서구 라구 선거구	3	화곡본동, 화곡제6동, 우장산동	강서구 라구 선거구	3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서구 마구 선거구	2	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강서구 마구 선거구	3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바구 선거구	2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바구 선거구	2	염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서구 사구 선거구	2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강서구 사구 선거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서구 아구 선거구	2	염창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강서구 아구 선거구	2	화곡본동, 화곡제6동
구로구	(생략)			(현행과 같음)		
금천구	(생략)			(현행과 같음)		

자치구별	현행			개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영등포구	(생략)			(현행과 같음)		
동작구	(생략)			(현행과 같음)		
관악구	(생략)			(현행과 같음)		
서초구	(생략)			(현행과 같음)		
강남구	소계	18	의원정수 21 (지역구 18, 비례 3)	소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강남구 가 선 거 구	2	신사동, 압구정동	강남구 가 선 거 구	2	신사동, 논현1동,
	강남구 나 선 거 구	2	논현1동, 논현2동, 청담동	강남구 나 선 거 구	2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 다 선 거 구	2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강남구 다 선 거 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 라 선 거 구	3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라 선 거 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남구 마 선 거 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남구 마 선 거 구	2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강남구 바 선 거 구	2	대치2동, 일원2동	강남구 바 선 거 구	2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강남구 사 선 거 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남구 사 선 거 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남구 아 선 거 구	3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강남구 아 선 거 구	2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자 선 거 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강남구 자 선 거 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송파구	소계	23	의원정수 26 (지역구 23, 비례 3)	소계	(현행과 같음)	
	송파구 가 선 거 구	3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 가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송파구 나 선 거 구	2	방이2동, 오륜동	송파구 나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송파구 다 선 거 구	2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송파구 다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송파구 라 선 거 구	3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송파구 라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송파구 마 선 거 구	3	삼전동, 잠실3동	송파구 마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송파구 바 선 거 구	2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송파구 바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송파구 사 선 거 구	2	오금동, 가락본동	송파구 사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송파구 아 선 거 구	2	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아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송파구 자 선 거 구	2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송파구 자 선 거 구	(현행과 같음)	

자치구별	현 행			개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 거 구 송 파 구 차 선 거 구	2	거여2동, 장지동	선 거 구 송 파 구 차 선 거 구	2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강 동 구 가 선 거 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 동 구 가 선 거 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 동 구 나 선 거 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 동 구 나 선 거 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 동 구 다 선 거 구	2	상일동, 명일제2동	강 동 구 다 선 거 구	2	상일동, 명일제2동
	강 동 구 라 선 거 구	2	명일제1동, 길동	강 동 구 라 선 거 구	2	명일제1동, 길동
	강 동 구 마 선 거 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 동 구 마 선 거 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 동 구 바 선 거 구	2	천호제2동	강 동 구 바 선 거 구	2	천호제2동
	강 동 구 사 선 거 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강 동 구 사 선 거 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강 동 구 아 선 거 구	2	둔촌제1동, 둔촌제2동	강 동 구 아 선 거 구	2	둔촌제1동, 둔촌제2동